

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②

- 50억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김 일 /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팀 팀장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글 쓰는 순서]

- | |
|------------------------|
| ① 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일반 : 지난 호 |
|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번 호 |
| ③ 적격심사 실무사례 : 다음 호 |

II. 적격심사 세부기준

1. 공공공사 입찰 참여 시 경영평가항목 중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입찰에 참여해도 소용없는데?

Q 우리 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정부에서 발주하는 기계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경영평가항목 중 부채비율이 높아서(150%) 입찰에 참여하여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요?

A 정부에서 낙찰자 선택방법으로 사용하는 적격심사제도는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 업체의 공사이행능력,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은 9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2단계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따라서 입찰가격이 아무리 낮더라도 적격통과점수가 95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낙찰자에서 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 적격통과점수는 어떻게 수치화 되는 걸까요?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는 조달

청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의 설비공사에 있어서 적격심사점수 평가방법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적격심사는 크게 ①수행능력평가점수 30점과 ②입찰가격평가점수 70점으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인 수행능력평가점수는 다시 ①-1 시공경험평가점수 15점과 ①-2 경영상태평가점수 15점으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다시 경영상태평가점수 15점은 ①-2-1 부채비율 7점, ①-2-2 유동비율 7점, ①-2-3 영업기간 1점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무척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간단히 설명하면 입찰참가자는 적격 통과점수인 95점을 받기 위해서 ①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점 만점을 받고 ②입찰가격점수를 65점 받아도 되고, 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좋지 않아 ①수행능력평가 점수를 25점 받고 ②입찰가격평가점수를 70점 만점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기 두 사례는 모두 적격심사점수가 95점을

통과하였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입찰가격점수 65점의 예정가격대비 낙찰가율은 86.745%이지만 입찰가격점수 70점의 예정가격대비 낙찰가율은 88%입니다. 따라서 입찰가격이 낮은 첫 번째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결국 수행능력평가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일수록 입찰가격평가점수를 낮게 받아도 되므로 유리합니다. 귀 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기계설비업체 전체평균 비율인 119.72%보다 높은 150%이므로 아래 표에서와 같이 부채비율 점수는 6.2점이 됩니다. 귀 사는 수행능력평가 점수에서 부족한 만큼의 점수(0.8점)를 입찰가격평가점수에서 만회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행능력평가점수가 만점 나오는 업체보다는 입찰금액이 높아져 입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입찰에 참여하여도 전혀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기계설비공사 산식

① 수행능력평가 (30점)	①-1 시공경험 평가 (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적용	심사항목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75%이상:15.0점 B:60%이상:13.3점 C:45%이상:11.6점 D:30%이상:9.9점 E:30%미만: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이외의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5 실적계수 = $\frac{\text{업종별최근3년간실적누계액}}{(\text{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 단, 평점상한은 15점					
• 3년간 실적을 요구하나 보유실적이 1년간 실적만 있는 경우 평가점수는? →보유기간의 실적으로만 평가 ($\frac{\text{업종별보유기간실적의합계액}}{(\text{예비가격기초금액} \times 1)} \times 15$)								
	①-2 경영상태 평가 (15점)	구분	2004 업계평균비율		등급	평점	해당업체	
		기계설비	가스1종				기계설비	가스1종
①-2-1 부채비율 (7점) (부채총계 /자기자본)		119.72%	150.29%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7.0 6.2 5.4 4.6 3.8	119.72%미만 155.636%미만 191.552%미만 227.468%미만 227.468%이상	150.29%미만 195.377%미만 240.464%미만 285.551%미만 285.551%이상
①-2-2 유동비율 (7점) (유동자산 /유동부채)	124.02%	112.40%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124.02%이상 111.618%이상 99.216%이상 86.814%이상 86.814%미만	112.40%이상 101.16%이상 89.92%이상 78.68%이상 78.68%미만	

		심사항목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구분	2004 업계평균비율		등급	평점	해당업체		
			기계설비	가스1종			기계설비		가스1종
① 수행능력평가 (30점)	①-2 경영상태 평가 (15점)	①-2-3 영업기간 (1.0점)			3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법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의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의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② 입찰가격평가 (70점)	$70-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낙찰하한율 : 86.745%								

2. 87.745%, 86.745% 등의 낙찰률은 무엇을 의미하나?

Q 입찰을 하다보니 87.745%니 86.745%니 하는 등의 낙찰율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요?

A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일정금액이하로 입찰가격을 낮게 쓰면 쓸수록 적격심사점수 중 입찰가격점수가 그

만큼 감점되어 결국 적격통과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저적격통과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예정가격 대비 일정금액의 낙찰하한선이 정해지게 되었고 그것이 추정가격에 따라 조달청인 경우 기계설비공사는 1억원미만(행자부는 1.5억원미만) 87.745%, 50억원미만 1억원이상(행자부는 1.5억원이상)은 86.745%가 됩니다. 아래에 조달청과 행자부의 추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과 입찰가격평점을 정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업종	추정가격		투찰(낙찰) 하한율	입찰가격 평점산식 (낙찰율1%당 적격점수 차이)
	미 만	이 상		
전체업종	-	1000억원	72.995%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1점)
전체업종	1000억원	300억원	77.995%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1점)
전체업종	300억원	100억원	82.995%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1점)
전체업종	100억원	50억원	85.495%	50 - 2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2점)
일반건설	50억원	10억원	86.745%	7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4점)
전문/설비	50억원	1억원		
전기/소방/정보통신	50억원	3억원	87.745%	80 - 2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20점) 90 - 2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20점)
일반건설	10억원	3억원		
일반건설	3억원	-		
전문/설비	1억원	-		
전기/소방/정보통신	3억원	-		

● 행정자치부

업종	추정가격		투찰(낙찰) 하한율	입찰가격 평점산식 (낙찰율1%당 적격점수 차이)
	미 만	이 상		
전체업종	-	1000억원	72.995%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1점)
전체업종	1000억원	300억원	77.995%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1점)
전체업종	300억원	100억원	82.995%	3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1점)
전체업종	100억원	50억원	85.495%	50 - 2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2점)
일반건설	50억원	10억원	86.745%	70 - 4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4점)
전문/설비	50억원	20억원		
전문/설비	20억원	1.5억원		
전기/소방/정보통신	50억원	20억원		
전문/설비	20억원	3억원	87.745%	80 - 2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20점)
일반건설	10억원	3억원		
전문/설비	1.5억원	1억원		
전기/소방/정보통신	3억원	1.5억원		
일반건설	3억원	2억원		90 - 20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20점)
일반건설	2억원	-		
전문/설비	1억원	-		
전기/소방/정보통신	1.5억원	-		

※ 최근 최저가대상 입찰이 PQ 500억원이상 공사에서 전체 3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표에서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의 공사는 곧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심사의 경영상태평가 항목에서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영상태평균비율을 산정 및 적용

Q 입찰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평가 항목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영상태평균비율은 어떻게 산정되고 적용되나요?

A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통상 매년 7월초에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들의 경영상태평균비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협회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게재) 그리고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7호에 의하면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평가 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공표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경영상태평균비율은 차기연도 평균비율이 발표되기 전까지 정부시설공사 입찰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평균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기계설비		가스1종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부채비율	119.72	145.43	150.29	158.49
유동비율	124.02	96.05	112.40	104.18
매출액순이익율	2.28	2.00	4.67	4.27
자산회전율	1.43회	1.23회	1.05회	0.93회

4.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 시 시공경험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 중 최근 3년간의 기산년도

Q 적격심사에 있어 수행능력평가 시 시공경험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에서 최근 3년간의 기산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1호(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1호, 별표1)에 의거 시공경험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에 있어서 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산년도로 역산하여 3년 이내의 실적누계액을 적용합니다.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실적통계 적용기준일이 매년 7. 1(가정)인 경우 3년간의 실적금액 적용년도는?

- ◆ 2006. 6. 30. 이전 입찰공고분 : 2002년, 2003년, 2004년
- ◆ 2006. 7. 1. 이후 입찰공고분 : 2003년, 2004년, 2005년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5.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Q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A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평가요소인 공사실적은 동종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준공된 공사의 시공실적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1건 공사의 시공실적이 당해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또는 금액) 미만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

공고에 명시토록 되어있습니다.(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 별지 시공경험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6. 지역제한의 지방교육청 기계설비공사 입찰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했을 경우 평가방법

Q 지역제한으로 되어 있는 000지방교육청의 기계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수행능력평가 시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했을 경우 평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지방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평가, 신인도)평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6호다목 단서에 의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제한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한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됩니다.

7. 공동계약으로 입찰 참여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 방법

Q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수행능력평가 시 시공경험평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공동계약에 있어 각 구성원들의 시공비율 계산은 입찰에 당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찰실무자는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적격심사 평가 각 항목별로 구성원들의 시공비율을 계산하여 정확한 점수가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과 같은 공동계약에 있어 시공경험평가 방법도 쉬운 것 같지만 오랫동안 입찰실무를 한분도 간혹 착각하여 입찰을 망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

니다. 우선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간혹 착각하기 쉬운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 조달청 입찰을 기준으로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기계설비공사 입찰의 시공경험평가 점수는 15점이 만점이며, 계산산식은 통상 실적외의 경쟁입찰방식에서 있어 업종별최근3년간실적누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배이상인 경우 만점이 나옵니다. 귀사와 같은 공동계약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 공사에예정금액 = 16억원, 기초금액 = 15억원,
 - 만점에 필요한 시공실적은 15억원의 2배인 30억원
 - 공동수급구성원 2개사
 - A업체 : 시공비율=60%, 최근3년간 기계설비공사실적 누계액 = 25억원
 - B업체 : 시공비율=40%, 최근3년간 기계설비공사실적 누계액 = 20억원
 - 평가산식은
- $$\left[\frac{A\text{업체실적}(25\text{억원}) \times 60\%(\text{시공비율}) + B\text{업체실적}(20\text{억원}) \times 40\%(\text{시공비율})}{15\text{억원}(\text{예비가격기초금액})} \right] \times 15 = 11,499$$
- 따라서 상기 시공경험평가점수는 만점 15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혼돈하기 쉬운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시공경험평가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만점에 필요한 시공실적(30억원)에 공동수급구성원들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나온 실적이 당해 구성원의 3년간 누계실적보다 낮으면 만점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A업체는 만점 30억원의 실적에 당해업체 시공비율인 60%를 곱하여 18억원만 누계실적이 넘으면 되고, B업체역시 만점 30억원의 실적에 당해업체 시공비율인 40%를 곱하여 12억원만 누계실적이 넘으면 만점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실무에서 실수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 미보유시 적격심사에 감점 적용여부

Q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적격심사 시 감점 적용된다는데 기계설비공사인 경우도 해당되나요?

A 조달청과 행정자치부 입찰 모두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입찰시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로 -10점 감점항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에 참여하는 당해업종이 관계법령에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10점을 감점 처리하는 기준으로 현재는 일반건설공사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2004년도 말 재무제표를 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협회의 경영상태평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Q 우리 회사는 협회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2004년도 말 재무제표를 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00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하여 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기시 협회의 경영상태평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협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영상태 평가서류를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외감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평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조달청 입찰인 경우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0. 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 정부시설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Q 우리 회사는 기계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이번에 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정부시설공사입찰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불이익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습니까?

A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들(기계설비업체)이 주로 참여하는 추정가격 50억미만의 적격심사의 평가항목에는 건설재해율과 관련된 신인도 평가항목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입찰에 있어 신인도 평가항목에는 직전년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공사인 기계설비공사업체에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시설공사 입찰에 있어 귀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1.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적격심사제도는 조달청과 행정자치부로 나뉘는데 이 두 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Q 정부시설공사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제도는 크게 조달청과 행정자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기준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두 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맞습니다. 정부시설공사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제도는 크게 조달청과 행정자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준이 각 발주기관의 특성상 서로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공통된 점도 다수 있지요. 따라서 두 기준의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숙지만 하여도 정부시설공사입찰 제도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기준의 대표적인 차이점(추정가격50억원 미만 전문공사 중심)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과 행정자치부의 적격심사기준

구분	조달청(국가기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1. 적격심사 각 요소별 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원칙. 단,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기 시 그 기준에 따름	◆ 좌 동
2. 적격심사 서류 및 제출 기한	◆ 입찰공고일 현재 각 관련협회(우리협회,전문,건설등)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 단, 위 방법으로 평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함.	◆ 입찰공고일 현재 각 관련협회(우리협회,전문,건설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한 서류 ◆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실적은 관련양식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확인, 경영상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작성 절차에 따른 검토보고서 제출함.
3. 소수점처리방법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 적격심사분야별 평가점수 - 해당분야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경영상태평가 시 평가요소별 해당업체비율 - 소수점 처리없이 그대로 평가 ◆ 입찰가격점수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 좌 동 ◆ 적격심사분야별 평가점수 - 좌 동 ◆ 경영상태평가 시 평가요소별 해당업체비율 -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 입찰가격점수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조달청(국가기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4.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의 +2% ~ -2% : 15개 - 복수예비가격 작성 (적격대상자 선정 후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 ◆ 예비가격기초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일기준 7일전에 공개함 ◆ 예정가격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하여 그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 산술평균한 금액(1원미만 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의 +3%~0% : 7개 0%~-3% : 8개 - 복수예비가격 작성 (적격대상자 선정 후 예정가격과 함께 공개) ◆ 예비가격기초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일기준 5일전에 공개토록 되어있으나 통상 입찰공고문에 같이 공개함 ◆ 예정가격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5.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표 참조 ◆ 2005.3.22 조달청 보도자료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비공개) ◆ 행자부예규 제190호제2절, 2005.12.30 	
구간	범 위	구간	범 위
1	101,735~102,000	9	99,600~99,865
2	101,469~101,734	10	99,333~99,599
3	101,202~101,468	11	99,066~99,332
4	100,935~101,201	12	98,799~99,065
5	100,668~100,934	13	98,532~98,798
6	100,401~100,667	14	98,266~98,532
7	100,134~100,400	15	98,000~98,265
8	99,867~100,133		
6. 공동수급체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함(2003.7.31.개정) ◆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5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산정은 시공비율에 공사예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태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2005.12.30개정) ◆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3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산정은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단,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평가한다.(2004.2.11개정) 	
7. 지역업체참여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분야(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합산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 평가함. ◆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초과한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분야(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합산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 평가함. ◆ 상한선은 평가점수의 10% ◆ 지역제한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제외되며, 각 항목별 배점기준상 만점항목은 가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초과한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분야(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합산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 평가함. ◆ 상한선은 평가점수의 15% ◆ 좌 등 	

구분	조달청(국가기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p>8. 시공능력평가액과 입찰 참가</p>	<p>◆ 추정가격 50억원(전문공사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공사에정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p>	<p>◆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 제한(추정가격 일반:30억원, 전문:3억원이상 가능)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않는다.</p>
<p>9. 적격심사세부항 목별 평가기준 (추정가격50억원미만 전문공사기준)</p>	<p>◆ 시공경험 평가기준</p> <p>① 실적외의 기타 경쟁입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3년간 실적누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대비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배 이상(15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배 이상(15점) - 추정가격 1억원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배이상이면 특별신인도 가점 2점 <p>②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함. -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 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한다.(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이상 (15점) <p>◆ 경영상태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영위기간 없음 ○배점 : 10점(부채5점,유동5점) 	<p>◆ 시공경험 평가기준</p> <p>① 실적외의 기타 경쟁입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함. - 3년간 실적누계액이 추정가격대비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배 이상 (15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배 이상 (15점) - 추정가격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배 이상 (10점) - 추정가격 1억원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배 이상 이면 실적신인도 가점2점 <p>②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배점비율: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이상 (13.5점)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배점비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배 이상(1.5점) -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5억원이상 가. 최근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배점비율: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이상 (13.5점)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배점비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배 이상(1.5점) <p>◆ 경영상태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3년이상 ○배점 : 15점(부채7점,유동7점,영위기간1점) -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50%미만),유동비율(150%이상) ○영위기간 배점에 없음 ○배점 : 15점(부채8점,유동7점)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배점 : 15점(부채8점,유동7점) - 추정가격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비율(100%미만),유동비율(100%이상)

구분	조달청(국가기관)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9. 적격심사세부항 목별 평가기준 (추정가격 50억 원미만 전문공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감점(-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간설공사에 한함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미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점 : 10점(부채5점, 유동5점)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부채비율(100%미만), 유동비율(100%이상) ○ 배점 : 10점(경영:9.8점, 접근성: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인도감점(-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2년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음호 계속〉

세법규정 개정

국세청, 소득관련자료 세법 규정 개정

올해부터는 모든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소득관련 자료(지급조서 등)를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하도록 세법 규정이 개정되었다.

정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지원세제 등 선진국형복지제도의 도입을 추

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복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해야 함으로, 그 동안 납세편의상 가산세부과 또는 제출이 면제되었던 아래〈일용근로자〉 종업원 등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 제출 규정이 불가피하게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아래]

※ **종업원 1인 이상** 자영업자들(간편장부 대상 포함)은 모든 종업원의 인건비 내역(“지급조서”라고 함)을 다음해 2월말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법률 개정(소득세법 제81조)

※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다음달 말일(금년 1/4분기 지급분은 4월 30일)까지 지급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 고용근로자 및 동일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건설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전국 세무서에 문의〉